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제조시설설치승인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의무화〉
■박지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871호)

2024.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	---

III . 검토의견	3
------------------	---

※참고자료	7
-------------	---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지혜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4. 8. 16.
3. 회부연월일 : 2024. 8.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을 위해 건물 내 태양광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특히 EU의 경우 주거용보다 산업용 건물 지붕에 발전설비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 정부도 태양광의 효율적인 보급을 위해 2030년까지 산업단지에 6GW 규모의 태양광을 직접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태양광 입지 확보, 인·허가 기간 단축, 설비운영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입주기업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촉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그러나 산업단지 내 저조한 태양광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이러한 계획 외에도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산업단지 공장건축물 내 제조시설 설치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공장건축물의 지붕·옥상 등에 대하여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의 에너지 자립률을 제고하고 태양광의 지속가능한 보급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제1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공장건축물 내 제조시설 설치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공장 건축물의 지붕·옥상 등에 대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계획서를 포함한 설치승인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산업단지의 태양광 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제1항).

[표 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의3(제조시설설치승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건축물로서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u>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의3(제조시설설치승인) ① ----- ----- ----- ----- ----- ----- <u>제조시설</u> <u>설치승인</u> <u>신청서[공장건축물의 지붕·옥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공간에 대한 태양광 발전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의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을 이용하는 발전설비를 말한다) 설치 계획서를 포함한다]</u> 를 <u>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고</u> ----- ----- ----- -----

현행	개정안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를 태양광 보급의 핵심입지로 도약시키기 위하여 「산단태양광 활성화방안」(2024. 7. 3.)을 발표한 바 있음(참고1 참조). 이는 탄소중립, RE100 확산 등 국제규범에 따른 재생에너지 수요 확대 필요성에 발맞춰 계통·주민 수용성이 양호한 산단에 집중적으로 태양광을 보급하려는 것임.

즉, 정부는 간접적인 재정지원으로 태양광을 보급하고자 하는데, 여전히 낮은 참여 유인, 입지규제 및 재정여건에 따른 예산사업(참고2 참조) 감축 우려 등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개정안은 산업단지 내에 입주하려는 민간사업자가 공장건축물 내 제조시설설치승인 신청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의무화하여 보다 직접적으로 태양광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그런데 민간업체에게 제조시설 설치승인과 연계하여 태양광 발전설비설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공익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의

무부과¹⁾인지 여부에 대해 입법정책적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그리고 현행법 제14조의3제2항은 산단 내 입주업체에 대해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²⁾하므로, 산단 내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개정안에 따른 설비설치계획서 제출이 사실상 의무화 되지 못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동법의 시행예정법률(법률 제20442호, 2025. 3. 21. 시행)에는 20년이 경과된 산업단지에 대해 시·도지사가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방안(시설 개선 및 확충 방안을 포함) 및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포함하여 구조고도화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등이 신·증축 및 개축하는 건물은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24년, 34%)을 신재생에너지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용 또는 설치를 의무

1) 「행정기본법」

제10조(비례의 원칙) 행정작용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행정목적 달성에 데 유효하고 적절할 것
2. 행정목적 달성에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것
3.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할 것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조시설설치승인)

- ②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화한 입법례는 없다는 입장으로(참고3 참조), 이를 감안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56

참고 1

「산단태양광 활성화방안」 주요내용

1. 추진배경

- 탄소중립, RE100 확산 등 국제규범에 따른 재생에너지 수요 확대
 - 정부도 ‘질서있는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국가계획 수립
- 도전적 목표달성을 위해 우수입지 발굴 및 보급기반 구축 필요
 - 계통·주민 수용성이 양호한 산단에 집중, 활성화 방안 마련

2. 현황 및 여건진단

- (현황) 전국산단에 2.1GW 既 설치, 향후 12GW 추가 보급 가능
 - 호남권, 영남권에 설비집중, 연도별 보급량은 증가세(*'23: 405MW)
 - 분양면적, 건폐율, 설비설치율 등 고려한 기술적 잠재량은 약 12GW
- (여건) 주민·계통 수용성이 양호하나, 다양한 사업리스크 상존
 - 전력 多소비 지역이며, 既 개발지역으로 수용성 확보에 용이
 - 사업중단 우려, 낮은 참여유인, 입지규제 등이 불확실성으로 작용

3. 목표 및 과제: ①30년 6GW 보급, ②보급기반 구축, ③중대형 모델 확산

추진방향	세부 추진과제
1. 산단태양광 전주기 맞춤형 지원	① 입지 및 사업수요 발굴 위한 컨설팅 지원 ② 인허가의 체계적 관리 및 편의성 제고 ③ 안정적 운영 위한 유지보수·안전관리 고도화
2. 보급확대를 위한 공공부문 역할 강화	① 입지발굴 및 규제관련 지자체 역할 강화 ② 정책 고도화 및 이행 위한 거버넌스 구축 ③ 공공주도 대규모 시범사업 기획·추진
3. 산단태양광 보급 활성화 기반 조성	① 사업 참여 제고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② 사업리스크 해소 위한 지원체계 다양화 ③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술개발 및 현장적용

참고 2

산단 및 공장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국고)

□ 탄소중립형 산업단지환경조성(기후대응기금, 사업수행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구분	내역사업(단위: 백만원)			합계
	스마트에너지 플랫폼 구축 ¹⁾	에너지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 ²⁾	산단 특화 탄소 저감 ³⁾	
'22년	23,000	20,000	-	43,000
'23년	21,000	38,000	2,400	61,400
'24년	22,000	84,000	3,500	109,500

- 1) 산업단지 에너지 데이터 연결·공유를 통해 산업단지 차원의 에너지 효율화 지원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FEMS를 보급하고, 데이터 기반의 에너지 절감 솔루션 도입
- 2) 에너지 소비량이 높은 산업단지의 에너지 자립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신재생 분산에너지원을 구축하고 에너지 수요-공급 서비스를 제공해 입주기업의 RE100 인증 지원 ▶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사업](#)
- 3) 산단별 입주규모, 주요업종,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산업단지 인프라, 입주기업 등을 대상으로 산업단지 특성에 적합한 탄소저감 지원 추진

□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수행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구분	내역사업(단위: 백만원)				합계
	주택지원	건물지원*	융복합지원	사후관리 등	
'22년	65,000	78,540	175,695	2,200	321,435
'23년	48,939	61,174	134,582	2,305	247,000
'24년	27,937	36,646	99,264	3,642	167,489

* 상가, 공장 등 보급효과가 우수한 건물에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설비 보급을 위한 설치비 보조사업

참고 3

관련 기관 의견

기관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한국산업 단지공단 (‘24.8.28.)	○ 국민에 특정시설 설치의무를 부과함에 신중한 검토 필요 - 신재생에너지법에서도 제12조에서 시설 설치의무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부여하고 있을 뿐, 국민이 소유하는 공장 등에는 이를 설치권고사항으로만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산업집적법상 제조시설 설치승인 신청서 제출시 이에 부수하여 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을 제출토록 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이 해당 인허가신청의 승인여부를 결정시 중요한 판단 근거로 활용하여 해당시설 설치를 강제할 우려가 있으므로, 규제도입에 신중한 검토 필요 ○ 개정목적과 규율대상이 상이 - 개정안에서는 산업단지 공장건축물 내 제조시설 설치승인 시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계획을 제출토록 하는 것을 제안이 유로 밝히고 있으나, - 제조시설 설치승인 신청서는 산업단지 밖에 있는 개별 공장 내 제조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출하는 인허가 신청서*로서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한 규제목적 달성이 곤란 * 산업단지 내 공장의 경우 입주계약 체결시 제조시설 설치승인이 의제됨 ○ 행정기본법상 법제원칙 준수가 필요 - 행정기본법에서는 제13조에서 행정청의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 해당 작용과 실질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5조제2항에서 행정에 관한 법률 제정시 행정기본법 제정 목적과 원칙에 부합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제조시설 설치승인 신청서의 승인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제조시설의 설치규모 및 계획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게 될 것이므로, 해당 인허가와 직접 관련이 없는 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서 제출 등 별도 의무를 부과함에는 법제원칙을 고려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